

2026학년도 예수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1. 모집인원

모집유형		모집시기	모집단위	모집인원	일반적 자격기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정원외)	입학정원 2% 이내	정시(다)군	간호학부	2명	-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국외 에 체류한 자
	입학정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북한이탈주민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전 교육과정 이수자

2.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유 의 사 항
원서접수	교내접수	2025.12.29.(월) ~ 2025.12.31.(수) 17: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 예수대학교 대학본부 2층 입학담당	방문 접수
서류제출		2026.1.7.(수) 17:00 까지 본교 도착분에 한함	• 예수대학교 대학본부 2층 입학담당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83 예수대학교 대학본부 2층 입학담당자)
예비소집		2026.1.22.(목), 오후 2시	• 대학본부 2층 학생처	
면 접		2026.1.22.(목), 오후 2시 30분~	• 대학본부 2층 회의실	
합격자 발표		2026.2.2.(월), 오후 2시	• 개별 통보	
최초등록기간		2026.2.3.(화) ~ 5.(목)	• 전북은행	은행 마감시간 까지
후보 발표 및 등록		2026.2.5.(목) ~ 13.(금)	• 개별 통보, 전북은행	

3.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전형유형		모집단위	전형방법	전형요소 및 반영 비율	
				학생부 교과	면접구술
정원외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간호학부	일괄합산	-	100%

4. 지원자격

전형유형	지원 자격	어학기준								
전형 공통	■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증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 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 교육과정 중의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								
입학정원 2% 이내	■ 기본 학력요건 초중고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 졸업(예정)자 ■ 자격 요건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국외 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국외재학기간</td><td>-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개 학년 이상</td></tr><tr><td>국외체류기간</td><td>- 학생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0이상 - 부모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0이상</td></tr><tr><td>해외근무자 재직기간</td><td>-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td></tr></table> 가. 국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나. 국외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다. 국외재학기간	구분	내용	국외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개 학년 이상	국외체류기간	- 학생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0이상 - 부모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0이상	해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없음
구분	내용									
국외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개 학년 이상									
국외체류기간	- 학생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0이상 - 부모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0이상									
해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전형유형	지원 자격	어학기준
	- 해당 학년도의 온전한 학기를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학기 이수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또는 성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해당 학기를 재학기간으로 인정 1개 학년 산정 기준 - 학생이 학기 개시일로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라. 국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로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북한이탈주민)	■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자로서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국내 검정고시 인정)	없음
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한국의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한국 국적을 포함한 복수국적자 또는 무국적자는 제외함 - 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교육과정 중의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한국어능력 시험(TOPIK) 4급 이상
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전 교육과정 이수자)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한국어능력 시험(TOPIK) 4급 이상

전형유형	지원 자격	어학기준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함. (단, 12년 미만 이수 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5. 학교폭력조치사항 반영

전형유형	반영 방법	비고
재외국민과 외국인(2%)	학교폭력조치사항(1~9호) 학생부 기재시 부적격 처리함	※ 국내 고교 재학 기록 (학생부)이 있는 경우에 한함
북한이탈주민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교육과정 이수자	해당 없음	

6. 제출 서류

1) 전형 유형별 제출서류

전형유형	제출 서류(2026.1.7.(수), 17:00까지 제출)
입학정원 2% 이내	1. 모집원서(서식1),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재학기간 기록표(서식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5) 2.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3.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4.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학생) 6.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7.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부모, 학생) 8. 여권 사본(부모, 학생) 9.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모, 학생) 10.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국의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11.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서류) 12. 국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 이력(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13. 자영업자의 국외 세금납부 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14. 국내 고등학교 재학 기간이 있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대입전형용) 사본(학교장 직인 날인) 제출 필수(해당자에 한함)

전형유형	제출 서류(2026.1.7.(수), 17:00까지 제출)
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북한이탈주민)	1. 모집원서(서식1),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재학기간 기록표(서식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5) 2.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3.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학력확인서 또는 학력인정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국내 고등학교 재학 기간이 있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대입전형용) 사본(학교장 직인 날인) 제출 필수(해당자에 한함)
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1. 모집원서(서식1),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재학기간 기록표(서식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5) 2.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3.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5. 외국국적증명서(부모, 학생) 6. 재정보증서(서식2) 및 재정능력 입증 서류 - 재정보증서(보증인은 지원자의 “부”, “모” 를 원칙으로 하되 국내인도 가함) - 재정보증인의 미화 \$ 20,000상당의 은행예금 잔고증명서(1개월 이상 예치) 또는 미화 \$20,000상당의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7.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인증서 8. 국내 고등학교 재학 기간이 있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대입전형용) 사본(학교장 직인 날인) 제출 필수(해당자에 한함)
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전 교육과정 이수자)	1. 모집원서(서식1),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재학기간 기록표(서식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5) 2.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3. 초·중·고 재학증명서 4. 초·중·고 성적증명서 5. 출입국사실증명서 6.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7. 신분증 사본 8. 재정보증서(서식2) 및 재정능력 입증 서류 - 재정보증서(보증인은 지원자의 “부”, “모” 를 원칙으로 하되 국내인도 가함) - 재정보증인의 미화 \$ 20,000상당의 은행예금 잔고증명서(1개월 이상 예치) 또는 미화 \$20,000상당의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9.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인증서 10. 국적취득증명서(귀화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민만 해당)

2)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외국에서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해당국가에 소재한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 또는 해당 국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 발행 기관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 외국어로 된 모든 제출서류는 공증기관이 공증한 한국어 번역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제출서류의 지연도착, 제출서류의 미비, 기재상의 착오 및 누락, 주소의 불명, 연락처 오기재, 모집요강에서의 요구사항 미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
- 이 외, 자격심사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또는 영사확인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졸업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또는 영사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2026년 2월 20일(금)까지 제출)

7. 선발 원칙 및 전형요소별 반영 방법

선발 원칙	전형요소별 반영 방법
- 모든 전형은 전형요소별 득점을 일괄 합산하여 사정 총점순위로 모집인원의 100%를 선발함 - 서류 미제출자, 지원자격 미달자, 면접고사 결시자, 면접점수 평균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함	- 면접 : 면접은 개별 인터뷰를 통해 지원동기, 전공적성,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을 평가 기준(정성)에 의해 종합적으로 평가함

8. 전형료 안내

전형유형	전형료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50,000원

※ 원서접수 완료 후에는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음

※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전형료 잔액은 전형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비례하여 원서접수 시 입력한 환불계좌로 반환할 수 있음(단, 반환해야 할 원 금액에서 금융회사 전산망 등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차감하여 반환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의 전산망 등 이용에 소요되는 수수료가 반환해야 할 금액과 같거나 초과할 때에는 반환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반환하지 않을 수 있음(단, 학교 직접 방문의 경우 제외))

9. 지원자 유의사항

■ 지원자는 아래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원서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 가. 입학전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우리 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 나. 제출서류는 대리인이 제출하여도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능**하며 서류제출 기한 내에 제출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다.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이용하여 지원자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지원 자격 적격자에 한하여 면접고사**를 실시합니다.
- 라. 시험 당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마. 면접고사에 **불참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 바. 입학원서에 기재된 전형기간 연락처는 선발 종료시점까지 연락(전화 또는 전보)이 가능하여야 하며, 전화번호 및 주소가 오기 또는 변경되어 **연락이 두절될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본 대학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 입학원서의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절차 등 **미 이행으로 본인에게 불이익(합격 취소 등)이 발생**하더라도 본 대학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아. 부정한 방법 등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입학허가 후라도 학력조회 등을 통해 지원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입학허가 취소함)
- 자. 이중등록은 금지됩니다. 여러 대학(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 중복합격한 경우 반드시 한 대학교에만 등록하여야 하며, 이중등록 시에는 등록한 모든 대학교의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차. 합격자는 본교에서 정한 등록일정과 방법에 따라 입학절차를 마쳐야 하며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등록을 마치지 않을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입학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 카. 접수된 서류와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지원 자격 미달자 및 수험생의 귀책 없는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전형료 일부를 반환합니다.
- 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하고, 부정행위 당사자 및 관련자는 고발조치 합니다.
- 파. 본 입시요강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하. 기타 문의사항은 본 대학교 학생처 입학담당(063-230-7722)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0. 각종 서식

가.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집원서(서식1)

나. 재정보증서(서식2)

다. 추천서(서식3)

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재학기간 기록표(서식4)

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5)

(서식1)

2026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모집원서

접 수 번 호		*										수 험 번 호		*	
지 원 자	성 명	(한글)						(영어)				성별	남 · 여	최근 6개월 이내 사 진 (3cm × 4cm)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출 신 고 교	년 월 일						고등학교 (졸업예정 · 졸업)							
	외국거주기간	년 월													
지 원 자 모 집 단 위		() 학부 () 전형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													
	자택 전화번호							본인 휴대폰							
	E - mail														
보호자	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외근무기간	
		직장명 (근무국)							연락처					년 월 일 ~ 년 월 일	
		교포사항	(영주국)	(영주권 번호)				(최초 출국일)				년 월 일			
	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외근무기간	
		직장명 (근무국)							연락처					년 월 일 ~ 년 월 일	
		교포사항	(영주국)	(영주권 번호)				(최초 출국일)				년 월 일			
대리인	성 명					전 화 (휴대폰)					관계				
	주 소	(-)													
전형료 환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전형료 반환 방법 (택 1)	1. 전형료 환불계좌로 수령() 2. 학교 직접 방문하여 수령()														
본인은 귀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지원자 : (인 또는 서명) 년 월 일 보호자 : (인 또는 서명)															
예수대학교 총장 귀하										접수자			(인)		

*란은 기록하지 말 것

(서식2)

재정보증서

1. 지원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형구분	☐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모집단위	간호학부

2. 재정보증인 정보

성명	
직업	
주소	
연락처	
지원자와의 관계	
상기 학생(지원자)이 재학기간 중에 필요한 생활비 및 체재비 등 일체를 부담할 것을 보증합니다.	
20 . . .	
위 재정 보증자 : (인 또는 서명)	
※ 재정능력 입증서류 - 재정보증인은 지원자의 “부”, “모” 를 원칙으로 하되, 국내인도 가함 - 재정보증인의 미화 \$20,000상당의 은행예금 잔고증명서(1개월 이상 예치) 또는 미화 \$20,000상당의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1부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예수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3)

추천서

1. 지원자 및 추천인 인적사항

지원자	지원구분			
	성명		생년월일	
	수험번호	*	모집단위	간호학부
추천인	기관명			
	성명		직위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2. 추천내용(추천 이유 및 특기사항)

1. 지원학생

2. 부모

위 기재 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교는 2025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입시 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

목적	항목	보유기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 검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가족관계, 국내 출입국 기록, 재 외국민 등록정보, 해외 재직관 련 기록	10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지원자격 검토가 불가능하므로 선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

목적	항목	보유기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 검토	주민등록 번호(외국인등록 번호 또는 여권번호)	10년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지원자격 검토가 불가능하므로 선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이 후 이

지원자 부 성명 : (서명)

지원자 모 성명 : (서명)

지원자 본인 성명 : (서명)

예수대학교 총장 귀하